

제411회 임시회
'23. 9. 8.(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3. 제안사유

- 충북광역치매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26.)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심사·선정 하고자함

4. 민간위탁사유

- 중앙치매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관련 전문 종사자 육성,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

5. 現수탁기관 기본현황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최영석)

- 위탁기간 : 2020.12.27. ~ 2023.12.26.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조직현황 : 2개팀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7)

6.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2. 27. ~ 2026. 12. 26. (3년)
- 위탁금액 : 年612백만원(기금^{70%}428, 도비^{30%}184) *23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 충북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

7. 검토의견

가. 주요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3.12.26.)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도의회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심사한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주요사무는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등으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 본 동의안의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치매와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자료>

□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 (2023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총 계	23,337		
청주시 계	9,208	기타 시군계	14,129
상당구	2,717	충주시	2,917
서원구	2,213	제천시	1,866
흥덕구	2,157	보은군	1,037
청원구	2,121	옥천군	1,484
		영동군	1,240
		증평군	644
		진천군	1,174
		괴산군	1,107
		음성군	1,801
		단양군	859